

#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과 정책제안 등을 압축해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

2024. 4. 15.  
No. 962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심교언  
www.krihs.re.kr

최예슬 부연구위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조은주 전문연구위원

##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 주요 내용

-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기부금 모금에 대한 실증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 (기부금 모금 현황) 2023년 기부금 모금 총액은 약 650억 원, 기부자 수는 약 51만 명, 기부건수는 약 52만 건이며, 12월에 전체 모금액의 40%가 집중
  - (지역별) 전남, 경북, 전북 등의 순으로 모금액이 많고, 비수도권 도지역에 모금 집중
  - (거주지역별)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타 광역지자체에 고루 기부,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기부자는 인접한 도지역에, 비수도권 도지역 거주 기부자는 동일 광역지자체 내 타 기초지자체에 기부하는 경향
  - (연령대별·금액별)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 기부금액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의 비중이 높고, 500만 원 고액 기부자의 주된 연령층은 60대 이상
- (답례품 선택 현황) 농·축산물, 가공식품 유형과 3만 포인트 이하의 답례품 선호도가 높음
  - 30대 이하 및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지역사랑상품권, 60대 이상 및 비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농·축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음

### 정책방안

- (기부주체) 지역주민,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기부주체를 단계적으로 확대
- (기부금액 및 세액공제) 기부금액 제한 완화와 하한액 신설(소액 답례품 지급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감),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 한도 내 답례품 추가 지급 등 제도 개선
- (모금주체) 기초지자체에 국한하여 모금 허용, 광역지자체는 구·군을 통합하여 모금하는 방안 검토
- (답례품) 답례품 개발·선정 기준 완화, 답례품 비용지출 근거 마련, 답례품 품질관리 강화 등
- (모금방법) 사적 모임 등에 대한 모금방법 규제 완화,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 등
- (모금창구 및 모금 시스템 운영) 모금창구 다각화, 현행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 필요

# 01. 고향사랑기부제의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도입배경)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간 발전 격차 문제가 대두되어, 참여정부 이후 재정분권을 추진해 왔으나 지역 간 재정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지방재정은 열악해진 상황

(목적) 고향에 대한 새로운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기부금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근거법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 (2021년 10월 제정, 2023년 1월 시행)

## 주요 내용

(기부주체 및 대상)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광역시, 기초)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인으로 기부 가능

- (기부주체)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기부 불가
- (기부대상) 주민등록 주소지(현재 거주하는 지자체) 외 전국 모든 지자체(광역시, 기초)에 기부 가능
- (기부 상한액) 개인기부금 연 한도액은 500만 원으로 지정(지자체 모금 한도액은 없음)

(답례품) 기부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은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일정 한도 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

- 지자체 간 과열 경쟁 방지를 위해 답례품 종류와 상한선 규정
  - (답례품 종류) ①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자체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② 지자체가 해당 지자체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③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
  - (답례품 지급 한도) 매회 기부되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기부자에 답례품 제공 가능

(모금방법) 기부금 모금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한 모금활동을 허용하고, 기부금 모금 플랫폼으로는 농협 창구(오프라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온라인) 운영

- 다만 개별적인 전화, 서신, 전자적 전송매체, 호별 방문 등을 통한 개별 접촉 그리고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방문하여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모금방법은 금지

(세액공제) 개인당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기금 설치 및 사용, 결과 공개)

- (기금 사용목적) 고향사랑 기부금은 아래 네 가지 목적의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규정
  - ①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②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③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④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비용 사용) 지자체는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총당 가능
- (결과 공개의무) 지자체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기금의 운용결과를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무가 있음

## 02.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현황

### 총괄 현황

2023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총액은 약 650억 6,600만 원이며, 기부자 수는 51만 4,066명, 기부건수는 52만 6,305건임

고향사랑e음(온라인)과 농협 창구(오프라인)를 통해 모금된 금액비중은 8:2임

- 고향사랑e음을 통해 모금된 금액은 약 524억 원(80.6%), 농협 창구를 통해 모금된 금액은 약 126억 원(19.4%)

전체 모금액의 약 절반(49%)이 11월과 12월에 집중

- 2023년 상반기에 모금된 금액은 전체 모금액의 36%였으나, 2023년 하반기에 모금된 금액은 전체 모금액의 64%를 차지하였고, 전체 모금액의 40%가 12월에 집중

### 지역별 모금 현황

(광역지자체별 모금 현황) 기부금이 가장 많이 모금된 광역지자체(본청+시군구)는 전남(143.4억 원, 22%)이며, 이어서 경북(89.9억 원, 14%), 전북(84.8억 원, 13%), 경남(62.5억 원, 10%) 등의 순으로 확인

전체 모금액 중 비수도권과 수도권 비중은 각각 89%와 11%이며, 89개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비중은 각각 57%와 43%로 나타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이 집중

- 비수도권 도지역의 비중은 81%이며, 이어서 수도권 11%, 비수도권 광역시 8% 순으로 나타남
- 229개 지자체 중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비중은 39%에 그치나, 모금액의 비중은 57%(341억 원)에 달함

표 1 지역별 기부건수 및 모금액 현황

(단위: 건, %, 백만 원)

지역	기부건수	비율	모금액	비율
<b>수도권</b>	<b>77,023</b>	<b>14.6</b>	<b>7,160</b>	<b>11.0</b>
서울	27,385	5.2	2,481	3.8
경기	41,009	7.8	3,906	6.0
인천	8,629	1.6	773	1.2
<b>비수도권</b>	<b>449,282</b>	<b>85.4</b>	<b>57,906</b>	<b>89.0</b>
<b>광역시</b>	<b>53,974</b>	<b>10.3</b>	<b>5,295</b>	<b>8.1</b>
부산	15,354	2.9	1,274	5.0
대구	8,808	1.7	747	1.1
광주	12,591	2.4	1,516	2.3
대전	6,441	1.2	628	1.0
울산	9,193	1.7	985	1.5
세종	1,587	0.3	145	0.2
<b>도</b>	<b>395,308</b>	<b>75.1</b>	<b>52,610</b>	<b>80.9</b>
충북	21,922	4.2	3,112	4.8
충남	37,758	7.2	4,317	6.6
전북	63,625	12.1	8,481	13.0
전남	92,761	17.6	14,336	22.0
경북	66,001	12.5	8,999	13.8
경남	52,340	9.9	6,248	9.6
제주	16,608	3.2	1,823	2.8
강원	44,293	8.4	5,295	8.1
<b>계</b>	<b>526,305</b>	<b>100</b>	<b>65,066</b>	<b>100</b>

주: 기부지역은 광역(본청) 및 기초지자체를 모두 포함하며, 중복기부 건을 고려하기 위해 기부자 수가 아닌 기부건수를 기준으로 분석.

(상위 10개 지자체 모금 현황) 담양군 등 전남의 많은 시·군이 수위를 차지하며 이어서 제주(본청), 경북 및 전북 시·군의 약진이 관찰되는데, 이는 출향민 규모, 모금의 적극성, 홍보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

표 2 상위 10개 지자체 모금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지자체명	기부건수	모금액	지자체명	기부건수	모금액
전남 담양군	12,146	2,242	전남 영광군	7,111	934
제주(본청)	16,608	1,823	전북 순창군	4,289	878
전남 고흥군	4,428	1,231	전남 영암군	4,957	845
전남 나주시	6,751	1,067	전북 임실군	5,974	693
경북 예천군	5,170	977	경북 안동시	6,132	680

(모금액별 지자체 분포) 모금액이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지자체가 86곳(35%)으로 비중이 가장 높음

- 전체 243곳 지자체 중 절반 이상(140곳, 57%)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모금액이 5천만 원이 되지 않는 지자체는 23곳(9%)임
- 지자체별 평균 모금액은 약 2억 6천만 원이며, 모금액 기준 상위 20%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6억 5천만 원, 하위 20%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5,100만 원으로 나타남

표 3 모금액별 지자체 분포

모금액 구간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계
지자체 수(비율)	4곳(2%)	27곳(11%)	54곳(22%)	86곳(35%)	49곳(20%)	23곳(10%)	243곳(100%)

(기부 1건당 평균 기부액) 지자체 243곳 중 기부 1건당 평균 기부액(12만 3,628원)을 상회하는 지자체는 85곳(35%)이며, 광역지자체(본청 기준)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의 기부 1건당 평균 기부액은 대체로 10만 원 미만의 소액

- 전체 243곳 지자체 중 기부 1건당 평균 기부액이 20만 원 이상인 지자체는 6곳(2%)이며,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인 지자체는 138곳(57%), 10만 원 미만인 지자체는 99곳(41%)임
- 광역지자체(본청 기준)의 기부 1건당 평균 기부액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재 광역시(광주 제외) 8곳은 10만 원 미만의 소액이었으며, 기부 1건당 평균 기부액이 20만 원 이상인 광역지자체는 경북 한 곳에 그침

## 연령대별 기부 현황

연령대별로는 30~50대(80%)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이 세액공제 혜택 등을 이유로 기부에 관심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연령대별 비중은 30대(29%), 40대(27%), 50대(24%), 60대 이상(9%), 20대 이하(11%) 순으로 확인

연령대별 기부건수 비중은 지역별로 상이

-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는 대체로 전국과 유사한 분포(1위 30대, 2위 40대)를 보였으나 전북, 전남 등 비수도권 도지역에서는 40대와 50대의 기부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구는 60대 이상 기부비중이 20%를 초과

표 4 연령대별 기부건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기부건수	57,040	153,772	141,735	125,963	47,795	526,305
비율	10.8	29.2	26.9	23.9	9.1	100

## 기부금액별 기부 현황

기부자의 84%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44만 1,291건)'을 기부

- 기부건수는 10만 원(83.8%), 1만 원 이하(9.6%) 등의 순으로 많으며, 10만 원 이하의 비중은 97%에 달함

표 5 기부금액별 기부건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1만 원 이하	1만 원 초과 10만 원 미만	10만 원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초과 500만 원 미만	500만 원
기부건수	50,298	18,901	441,291	12,199	1,564	2,052
비율	9.6	3.6	83.8	2.3	0.3	0.4

기부자들이 대체로 30~50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나, 500만 원 고액 기부자의 주된 연령층은 60대 이상

- (10만 원 이하의 소액 기부) 30대(53%), 40대(47%), 50대(41%) 등의 순으로 높음
- (500만 원의 고액 기부) 60대 이상(50%), 50대(29%), 40대(11%) 등의 순으로 높고, 주로 상반기에 모금(40%)  
- 전체 모금액의 약 절반(49%)이 11월과 12월에 집중된 것과 상이

고액 기부자의 거주지역별 기부지역은 상이하나, 고액 기부는 주로 비수도권 도지역에 집중된 양상

- 500만 원의 고액 기부지역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비수도권 도지역의 비중이 93%, 지방광역시 5%, 수도권 2%를 차지하며, 광역지자체 수준에서는 전남(30%), 경북(19%), 전북(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고액 기부자의 거주지는 수도권(41%)에 집중되었으며, 이들은 대체로 비수도권 도지역에 기부하는 경향  
-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액 기부자는 타 광역지자체에, 비수도권 광역시에 거주하는 고액 기부자는 거주지역과 인접한 도지역에, 비수도권 도지역에 거주하는 고액 기부자는 동일 광역지자체 내 타 기초지자체에 기부하는 경향

## 거주지역별 기부 현황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거주지역(광역시, 도)에 따라 기부지역 양상이 상이

- (수도권 거주 기부자) 수도권 지역은 10곳 이상의 타 광역지자체에 고루 기부하는 양상이 관찰  
- 거주지와 동일한 광역지자체 내 타 기초지자체에 기부한 비율은 서울(13%), 경기(18%), 인천(15%)인데, 기부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도 서울은 25%, 경기는 27%, 인천은 30% 수준임  
- 연령대가 높을수록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에 기부하는 비중은 감소, 비수도권 도지역에 기부하는 비중은 증가
-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기부자) 인접한 도지역에 기부하는 경향  
- 광주에 거주하는 기부자는 전남(68%)에, 대구에 거주하는 기부자는 경북(49%)에 가장 많이 기부
- (비수도권 도지역 거주 기부자) 자신들이 거주하는 광역지자체 내 타 기초지자체에 기부하는 경향  
- 기부자 본인이 거주하는 광역지자체 내 타 기초지자체에 기부하는 비율은 전북 71%, 전남 67% 등에 이룸

표 6 거주지역에 따른 기부지역 순위

거주지역	기부지역			거주지역	기부지역			거주지역	기부지역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서울	전남	서울	전북	대구	경북	대구	경남	충남	충남	전남	전북
경기	경기	전남	전북	광주	전남	광주	전북	전북	전북	경북	충남
인천	인천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전북	전남	전남	전남	광주	전북
강원	강원	전남	경기	울산	울산	경북	경남	경북	경북	전남	전북
부산	부산	경남	경북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남	전남	경북
				충북	충북	전북	전남	제주	전남	경기	경북

# 03.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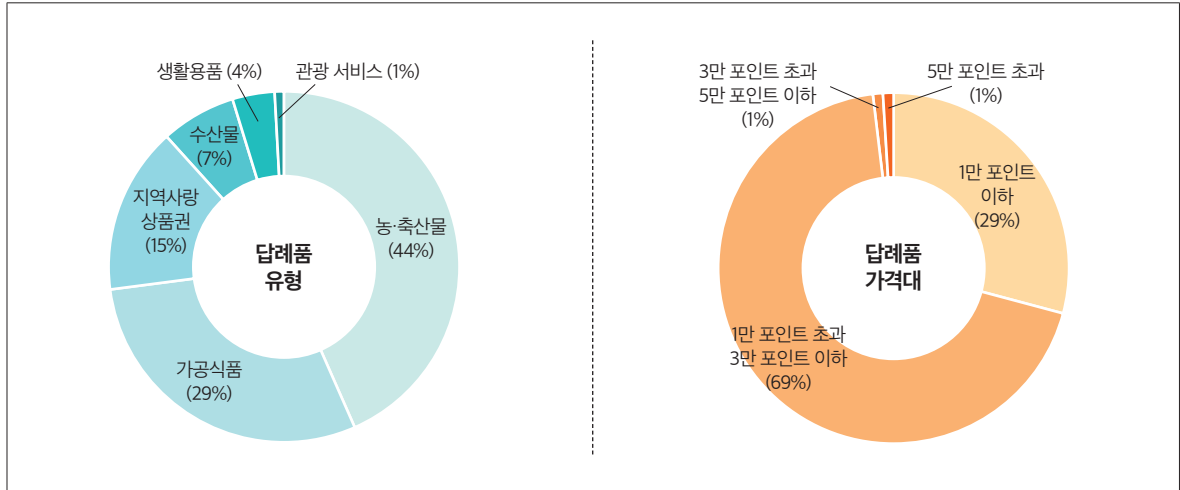
## 답례품 선호 유형 및 가격대

2023년 답례품 선택건수 기준, 농·축산물, 가공식품,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답례품이 가장 인기

- 농·축산물과 수산물의 비중은 절반 이상(51%)이며, 가공식품의 비중도 29%에 달함

'3만 포인트 이하' 답례품 선택 비중은 98.3%인데, 이는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금의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됨

그림 1 답례품 유형 및 가격대 선택 현황



주: 1) 답례품은 결제 완료, 구매 확정, 배송 완료, 배송 준비 중, 배송 중이면서 판매가가 0원이 아닌 건에 한하여 분석.

2) 6가지 답례품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답례품은 '카테고리 없음'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비중은 0.4%임.

## 답례품 선택 현황

(기부지역) 광역지자체별(분청+시군구)로 답례품 가격대별 선택 현황이 상이

- 1만 포인트 이하의 '소액' 답례품 선택 비중은 서울이 98%에 달했으며, 인천 49%, 부산 40%로 그 뒤를 이음
- 5만 포인트 초과와 '고액' 답례품을 선택한 비중은 모든 시도에서 대체로 0~1% 내외임

(연령대) 30대 이하는 지역사랑상품권, 40대 이상은 농·축산물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음

- (30대 이하) 지역사랑상품권(39%), 농·축산물(30%), 가공식품(23%) 순으로 선호가 높음
- (40~50대, 60대 이상) 농·축산물, 가공식품, 지역사랑상품권 순으로 선호가 높음

(거주지역) 수도권 거주 기부자들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음

- 지역사랑상품권(37%), 농·축산물(32%), 가공식품(23%), 수산물(5%) 등의 순으로 선호가 높음
- 30대 이하 연령대는 지역사랑상품권, 60대 이상 연령대는 농·축산물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비중: 30대 이하(44%) > 40~50대(30%) > 60대 이상(23%)
  - 농·축산물 선택 비중: 60대 이상(40%) > 40~50대(35%) > 30대 이하(28%)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지역에 거주하는 기부자들은 '농·축산물'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음

- 공통적으로 농·축산물, 가공식품, 지역사랑상품권, 수산물, 생활용품, 관광 서비스 등의 순으로 선호가 높음

# 04. 제도 개선방안

의안정보시스템 내 발의된 의안 내용(22년 10월~23년 12월, 17건), 243개 지자체 정책실무자 대상 의견수렴 조사내용, 시도 연구원 권역별 협력 포럼 자료 등을 분석하여, 중점 제도 개선과제 도출

## 중점 제도 개선과제별 검토방향

### 중점과제 ① 기부주체

(현행)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허용(「고향사랑기부금법」 제4조)

(제도 개선방향)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과 기부주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부주체를 단계적으로 확대

- 지역주민(인구감소지역 주민에 한해 적용), 법인 또는 단체(주사무소 소재지 외 기부 허용<sup>1)</sup>)로 우선 확대하고, 지역주민(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모두 포함), 법인 또는 단체(주사무소 소재지 포함 기부 허용<sup>1)</sup>), 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등으로 확대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중점과제 ② 기부금액

(현행) 개인별 연간 상한액 500만 원

(제도 개선방향) 기부금액 제한 완화, 하한액 신설로 소액 답례품 지급에 소요되는 지자체 행정비용 절감 필요

- 개인별 연간 상한액 2,000만 원으로 확대(국회 본회의 의결(24년 2월)), 하한액 신설(일본은 하한액 2,000엔)

### 중점과제 ③ 세액공제

(현행) 10만 원 이하 기부액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도 개선방향)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제도 활성화 도모

- 수도권, 비수도권 대도시는 세액공제 한도 축소 또는 현행 유지, 인구감소지역은 세액공제 한도 확대, 은퇴자, 비취업자 등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부자 대상으로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답례품<sup>2)</sup>을 추가 지급

### 중점과제 ④ 모금주체

(현행) 전체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고향사랑기부금법」 제4조)

(제도 개선방향) ① 국민이 인식하는 고향의 공간적 단위(광역·기초 지자체, 읍·면·동, 마을 단위 등)가 연령 등에 따라 다르고, 수도권에서 계속 거주하는 인구비중이 증가하는 상황, ②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모금주체로서 역할이 중복되며 기초지자체 대비 광역지자체의 기부금액이 매우 저조한 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

- 기초지자체에 국한하여 모금 허용, 광역지자체는 구·군을 통합하여 모금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중점과제 ⑤ 답례품 개발 및 관리, 비용 처리

(현행)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그 외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고향사랑기부금법」 제9조), 답례품 비용 지출에 관한 명확한 근거 부재(「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 답례품 품질관리 문제 발생

(제도 개선방향) 지속적 기부 유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개발 및 선정기준 완화, 비용지출 근거 마련, 답례품 품질관리 강화 필요

- [답례품 개발 및 선정 기준] 지역에서 원재료를 조달하여 활용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 아니더라도 답례품 공급 허용, 농수산물 생산기반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답례품의 공동 개발·공급 허용 등
- [답례품 관리] 법 개정을 통해 답례품 비용지출 근거<sup>3)</sup> 마련
- [답례품 비용 처리] 납품업체 선정 시 현장 조사 및 위반 업체 행정조치 필요

1)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고향사랑 기금사업 중 국가가 인정한 기금사업에 한해 기부 허용.

2) 지역의 방문과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답례품 제공을 우선 검토.

3)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기금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국회 본회의 의결(24.2월)).



## 중점과제 ⑥ 모금방법

(현행) 호별 방문, 개별적인 전화·서신,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대한 모금방법 규제(『고향사랑기부금법』 제7조)로 인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제도 개선방향) 사적 모임 등에 대한 모금방법 규제 완화 필요

- 호별 방문, 개별적인 전화·서신 외 모금방법 허용(국회 본회의 의결('24.2월)), 중앙부처와 지자체 홍보 책무 강화(국회 본회의 의결('24.2월)), 중앙부처는 KTX, 전광판 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지자체는 기금사업 및 답례품을 홍보하는 등 역할 분담

## 중점과제 ⑦ 모금창구 및 모금 시스템 운영

(현행) 온라인(고향사랑e음 시스템), 오프라인(농협 창구)에서만 기부 가능(『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 현행 고향사랑e음 시스템 내 기금사업 및 답례품 목록 개선 필요성 대두

(제도 개선방향) 기부 활성화를 위해 모금창구 다각화, 현행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 필요

- [모금창구 다각화] 민간 모금 플랫폼 도입 및 운영(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활용한 기부, 그 외 민간 모금 플랫폼 운영 허용 등)
-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 답례품 목록 및 분류체계 개선, 답례품 선택 후 남은 포인트 재기부 허용, 고령 기부자 대상 시니어 앱 운영, 연고지 등 기부자 기초자료 수집, 가족 간 포인트 합산 제도 도입 및 운영 등

## 기타 사항

(제도 명칭 변경) 고향에 대한 인식 변화, 수도권 계속거주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랑기부제' 등으로 변경 검토

(기부자 개인정보 열람 허용) 개인정보 열람 동의를 얻은 기부자에 한해 기금사업 추진 현황 등을 알릴 수 있도록 개인정보 열람 허용

(오프라인 창구에서 답례품 선택 허용) 오프라인 창구(농협)에서도 기부 후 답례품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최예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yschoi@krihs.re.kr, 044-960-0167)
- **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mscha@krihs.re.kr, 044-960-0190)
- **조은주**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전문연구위원(ejcho@krihs.re.kr, 044-960-0255)

※ 이 브리프는 "최예슬, 차미숙, 조은주, 2023.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 행정안전부"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임.

※ 이 브리프는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 정부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집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원의 입장과 다를 수 있음.